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8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김교홍 · 맹성규 · 노종면
허종식 · 임호선 · 장철민
윤준병 · 문진석 · 김영진
김현정 · 조정식 · 최혁진
박정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제10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1조제1항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⑪ (생략)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u>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u>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u>
<신설>	1. <u>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신설>	2. <u>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u>
<신설>	3. <u>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u>

<신 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
허가) ① 제105조의 규정에 따
라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
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저작
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
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
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
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

	<u>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 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 급제의 운영,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
제108조(감독) ① (생략)	제108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 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 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u>저 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 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u>	② ----- ----- ----- <u>다</u> <u>음 각 호의</u> ----- ----- -----.
<u><신 설></u>	<u>1.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u>
<u><신 설></u>	<u>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 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u>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 ----- -----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같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u>100분의 1</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u>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 ----- ----- ----- ----- ----- ----- ----- ----- <u>100분의 3</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